

문서번호 대의협 제0643 - 04987호

시행일자 2022. 7. 29.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법정감염병 기한 내 신고 협조 요청(질병관리청)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1952(2022.7.28.)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제1급 감염병을 진단한 경우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이외 법정감염병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신고가 늦어지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감염병의 적시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정감염병 신고 교육·홍보 활성화**를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요청해 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국가 감염병 감시사업 안내 리플렛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 각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전문과목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각과개원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사의협의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